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의견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 중심)

2006. 1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제 출 배 경

○ 우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투표참여 및 정치자금 조성방법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06. 12. 12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최근 주요 언론기관에서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대담을 실시하여 보도하고 있는 바,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언론기관이 선거일 120일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존중하여 공직선거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우리위원회는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이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임.

Ⅱ. 개 정 의 견

언론기관의 대담 상시 허용

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담에 관하여는 시기의 제한을 폐지하여 언론기관은 상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대담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질 검증과 비교평가에 효과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고자 함.